
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

2017. 11. 2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추진배경	1
II. 추진방향	5
III. 세부 추진과제	6
1.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	6
2.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	16
3. 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	21
IV. 추진계획	26

I. 추진배경 : 우리 혁신창업 생태계 현주소

①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

- '00년 초반 벤처 붐 등 역동적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가 IMF 극복 및 성장에 기여하였으나, 이후 전반적 활력이 저하
 - * 주요 도시별 창업 생태계 가치(Startup Genome, '17년, 세계 55개 도시, 10억불) : (실리콘밸리) 264, (베이징) 131, (텔아비브) 22, (싱가폴) 11, (서울) 2.4
- 창업생태계의 활력 저하, 창업기업의 중견·대기업으로의 성장 등 역동성 저하로 전통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고착화
 - 세계 215개 유니콘기업 중 국내 벤처기업은 2개, 창업을 통한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*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
 - * 창업형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(피터슨연구소, %) : (美) 32.1, (日) 63.0, (韓) 18.5

② 창업 양적 확대, 질적 측면에서의 혁신성은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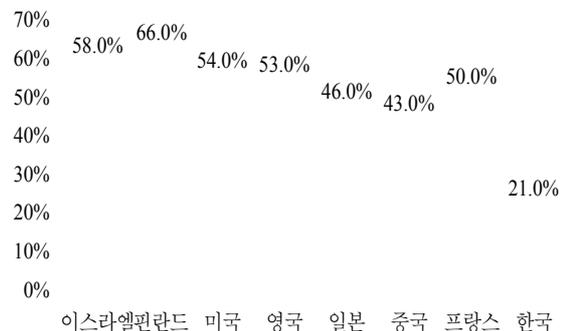
- 신설법인 수,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들은 지속 상승 추세
- 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은 미흡
 - 국내 창업은 생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,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은 유럽·미국·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
 -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석박사급 등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부족
 - * 창업자 중 석·박사 비중(14년, 창업 7년내 기업 198만개 기준)은 5.3%에 불과

< 연도별 신설법인·벤처기업 수 >



* 자료 : 통계청

<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 >



* 자료 : OECD('14년)

③ 주요국에 비해 벤처투자 부족 등 모험자본 역할 미흡

○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, 경제규모 등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

*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('15년, %) : (美) 0.33, (中) 0.24('14년 0.11), (韓) 0.13

○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업당 벤처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투자보다 대출형태의 자금조달에 많이 의존

- 특히, 제품개발 이후 양산·사업화 등 성장단계(Series B·C)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

- 벤처투자와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혁신성·성장성 높은 기업들에 효율적 자금공급 기능 저하

구 분	창업초기단계		성장단계	
	엔젤/AC	초기VC	일반VC	PE
한 국	1억원 미만	5억원 미만	10~20억원	50억원 내외
외 국	Seeding	Series A	Series B	Series C
	5억원	50억원	150억원	320억원

○ 벤처투자의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

- 국내 벤처캐피탈의 보통주 투자 비중은 약 20%에 불과하고, 상환우선주·회사채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

- 엔젤투자*, 클라우드펀딩** 등 초기 창업기업 대상의 新유형 자금조달 수단도 아직까지 초기단계

* 엔젤투자 비중(벤처투자+엔젤투자 대비, '15년, %) : (美) 28.8, (英) 29.1, (韓) 6.3

** 클라우드펀딩 '16.1월부터 자금조달 허용, 월평균 발행건수가 12건에 불과



* 자료 : 통계청

* 자료 : 벤처캐피탈협회

4 '투자 → 회수', '실패 → 재도전'의 선순환 고리가 취약

○ 코스닥·M&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로 인해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이 제약

① M&A 등에 대한 기존 대기업·투자자의 인식·참여부족, 제도적 기반 미흡 등으로 관련 시장조성이 여전히 부진*

* 벤처투자 회수비중('16년, %) : (美) M&A 94 vs. IPO 6, (韓) M&A 11 vs. IPO 89

② 코스닥시장의 2부 리그화 등 시장기능이 약화

i) 창업 후 코스닥 상장·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*되고, 코스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도 감소**

* 창업 후 코스닥시장 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11.4년 소요('16년)

** 코스닥시장 자금조달 규모(조원, IPO+유상증자) : ('99) 4.5 → ('00) 7.1 → ('16) 3.7

ii) 코넥스·K-OTC 등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

구 분		'14년	'15년	'16년	'17년
코넥스	일평균 거래량(억원)	3.9	18.2	24.7	13.1
	신규상장(개)	34	49	50	20
K-OTC	일평균 거래량(억원)	9	9	6.4	6.8
	신규등록(개)	74	30	16	3

○ “창업실패 = 재기불능” 공식이 아직까지 유효, 재도전을 위한 제도적·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

-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지속 등 사업실패에 대한 창업자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

* 폐업기업 대표자 부담(중기부, '17년) : 3.56억원(보증 대위변제 3.09 + 조세체납 0.37 등)

- 정부 정책지원도 창업단계에 집중되고 재도전 지원은 미미

* '17년 창업·재도전 정책지원 금액(억원) : (창업단계) 5,945 (재도전단계) 213

** 2년 생존율 비교(%) : 창업기업 47.5('14년) vs. 정부지원 재도전기업 83.9('16년)

5 점진적인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붐 조성·확산에는 미흡

- 혁신창업·벤처활성화를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지원 추진
 - 부처별·분야별로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마련·시행
 - * '17년 계획기준 7개 부처가 6,158억원 규모의 창업지원 정책 수립·시행중 (중기부 5,191억원, 과기정통부 612억원, 특허청 111억원, 교육부 16억원 등)
 - 모태펀드 출자,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공급 확대
 - * 모태펀드 정부출자 추이(억원) : (11) 925 ('13) 1,425 ('15) 3,961 ('16) 2,130
 - 창조경제혁신센터·관교창조경제밸리 조성 등을 통해 혁신창업 인프라 확충 추진
- 벤처투자액 증가, 벤처기업 급증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, 점진적·분절적 정책으로 민간중심의 벤처 붐 조성에는 한계
 - 그간의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획기적 제도·인센티브 개선 보다는 점진적인 개편 위주
 - 각종 진입·행위규제 완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他 정책 수단 활용에는 다소 소홀
 - * (예시) 창업투자회사 설립시 과도한 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 요구, 유사한 벤처투자제도가 서로 다른 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음
- 중국 등은 “大衆創業·萬人革新” 기치 아래 혁신창업*을 전폭 지원하고, 정부+민간 협력을 통해 창업기반 조성** 노력
 - * 북경 중관촌·항주 몽상소진 등 창업기반 확충, 창업기업 각종 세금 대폭 면제 등
 - ** 佛 통신기업 창업자 Niel이 3,300억원을 투자,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설치, 정부도 해외 우수인력 유치, 3,000억원 규모의 지원기금 조성 등에 전력

⇒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,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“혁신창업 국가” 실현

II. 추진방향

◇ **목표** :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,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“혁신창업 국가” 실현

◇ 3대 추진방향

- ① 우수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**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**
- ②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,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**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**
- ③ 「창업 → 실패 → 재도전」, 「투자 → 회수 → 재투자」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**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**

< 추진방향 >



Ⅲ. 세부 추진과제

1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

◇ 기업·대학·출연연구 우수인재들의 質 높은 창업을 유도하고,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“제2의 벤처창업 붐” 조성

①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

□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내벤처·분사창업기업 활성화

- 사내벤처·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·운영
 - (창업준비)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‘예비벤처’에 포함하고, 연구개발 등 소요비용은 모기업이 先투자
 - *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 등이 가능한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 운영
 - (창업실행) 성공 가능성 등을 반영, 모기업 先투자 금액에 매칭*하여 사업화 자금(준비금)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
 - * 민·관 공동 재원(18년 200억원) 활용, 모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매칭
 - (창업이후) TIPS*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&D·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,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**
 - *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-up ; 민간이 투자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지원
 - ** 최장 지원기간 확대(2년→3년) 및 지원한도 상향(10억원→20억원)
- 분사창업 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을 유도 (모기업-정부간 협약)하고, 분사창업기업에도 세제혜택* 제공
 - *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→ 소득세·법인세 5년간 50% 감면(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- 모기업의 적극적인 사내벤처·분사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

- 대기업 등이 **상생협력기금 출연**으로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**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***에서 차감(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-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**동반성장지수 우대 확대**(1점→2점)
- 분사창업 **以前단계에서 공정위가 사전에 신속 상담**을 실시하여 대기업집단 **편입***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

* 모기업이 분사기업의 지분 30%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거나, 모기업이 분사기업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되면 편입

☞ **(현장목소리)** “대기업에게 벤처투자는 高리스크이기 때문에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꼭 필요합니다.” (OO △그룹 상무)
 “대기업 분사기업도 정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.” (OO 중견벤처기업 대표)

□ 대학 · 출연研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

- 교수 · 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창업 장려를 위해 **창업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, 휴 · 겸직 가능기간 · 조건 완화*** 유도

* 창업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매뉴얼을 제정하여 대학 등에 보급 · 확산

구 분		현 행	주요 개선(案)
대학	교원 평가	일부 대학만 반영	교원업적 재임용 평가 반영
	휴 · 겸직	기관자율 도입	휴 · 겸직 인정기간 확대
출연研	정원반영	창업휴직시 비별도 정원	별도정원 인정
	창업준비비용	창업준비비용 지원규정 미비	기술료 수입을 창업지원금으로 활용 인정
공공기관	창업인사규정	창업 인사규정 미비 (공공기관 3%만 시행)	창업 인사규정 제정 유도

- 창업실적 등의 **지표를 대학(LINC⁺) · 출연研(산업기술형) · 공공기관 평가에 확대반영***하여 창업을 권장하는 조직분위기 조성

* (재정지원 평가) LINC⁺(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) 정성지표 중 창업부문 비중 확대 (예시 : 3%→5%)

(출연研 평가) 창업지원규정 신설 · 개선시 출연연 평가에 반영

(공공기관 평가)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부여 추진(평가지침 개정 완료)

- 대학창업 지원사업의 **효과성 제고**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**개별사업 수행조직***을 **‘창업지원단’**으로 일원화

* 창업선도대학(중기부), 과기형 창업선도대학(과기정통부),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(교육부)

- 대학·출연연의 사업화·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공동 조성하는 **대학창업펀드*** 규모 확대

* 정부와 대학이 매칭하여 조성하는 창업투자 프로그램('17년 120억원 → '18년 150억원)

- 청소년·대학생들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**기업가정신 교육**을 **중고교 정규교과***에 포함하고, **창업선도대학 교육과정**에 도입

* 시행일정 : ('18.3月) 중1·고1 → ('19.3月) 중2·고2 → ('20.3月) 중3·고3

□ **팀창업·재창업·사회적기업 창업 등 다양한 창업유형 활성화**

- 다른 분야·배경 출신 인재들의 **융합형 팀창업** 촉진을 위해 **기술창업 정책지원 대상**에 우선 선정하고, 자금지원시 **우대**

- TIPS·창업선도대학·창업도약패키지 등 **기술창업 지원정책 전반**으로 확대 적용

- **‘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*** 확대 운영**을 통해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**창업유형 활성화**

*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 창업자에 대해 세대간 협력계획 및 사업성 평가 후, 사업화 비용(최대 1억원) 및 보육 지원

**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(억원) : ('17년) 127(신설) → ('18년) 148

- 동일분야 재창업자도 창업지원법령상 **신규 창업자**와 동일수준으로 **정책지원**(7년 이내 한정)

* (현행) 폐업 후 동일분야 재창업시 창업범위 대상에서 배제

- 소셜벤처 등 **사회적가치 기반의 창업기업**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內 **임팩트(Impact) 투자펀드**를 **1,000억원** 규모로 신설

②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

□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

- 벤처기업 확인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혁신성·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집중 지원받도록 선별기능 강화

* 선배벤처·벤처캐피탈 등 전문가로 민간위원회를 구성

- 대출·보증실적*에만 근거한 官 중심의 벤처확인 유형 폐지, 벤처투자·연구개발 유형 확대, 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

* (현행) 기보·중진공에서 대출·보증실적이 있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 가능
→ 대출·보증유형 90.4%, 벤처투자 3.6%, 연구개발 5.7%(17.7월末)

- 서류작성 등 벤처기업 확인기간 연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**현행 2년에서 3년**으로 확대

☞ **(현장목소리)** “06년에 벤처확인 제도를 바꾸면서, 혁신성·성장성 있는 기업보다 일반 중소기업들이 대거 벤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제대로 된 벤처기업을 키우려면 벤처확인 제도부터 재설계해야 됩니다.” (OO 선배벤처인)

□ TIPS 방식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

-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을 지원 제도 전반으로 확산하여 창업·벤처정책의 효과성 제고

- 사내벤처 지원제도, 창업선도대학, 창업도약패키지, 재도전 프로그램 등에 '18년부터 우선 적용

- 기존 창업·벤처정책을 zero-base에서 전수 검토하여 구체적 전환시기를 제시하는 '중장기 전환 로드맵' 마련(~'18.上)

-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 창업기업의 투자자·엑셀러레이터로 참여할 수 있도록 TIPS 운영과정에서 기업참여 확대방안 검토

□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공급 확대

- 기술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 여신모형*의 개발·적용 유도('17년 시범적용 → '20년 본격적용)
 - * (현행) 현재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분리되어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도 신용평가 등급이 낮으면 은행 대출에 어려움
- 동산담보물의 평가·관리·매각* 인프라를 구축하여 은행의 동산담보의 관리비용 절감 및 원활한 관리·처분 환경 조성
 - * (평가) 은행수요에 맞는 심화된 평가정보 제공
(관리) ICT를 활용한 자산관리 효율화
(매각) 실행요건 및 절차 명확화, 캠프·기계거래소 등을 통해 매각 활성화
- 기술력 높은 기업이 투·융자를 연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보에 5,000억원 투자연계보증제도 도입
 - 벤처캐피탈협회·모태펀드와 협력*하여 대상기업을 선정·지원하고, 보증요건·요율·범위 등을 우대**
 - * 기술보증기금·한국벤처투자·벤처캐피탈협회 3자간 업무협약 체결
 - ** 벤처투자금액 50% 이내 보증심사 면제, 0.5%p 보증료 감면, 창업 7년내 전액보증

③ 창업 걸림돌·애로·부담 해소 (부담금·조세·입지)

□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·세금부담 경감

-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(~22년)하고, 면제 부담금 종류·대상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*
 - * (1단계 : 면제부담금 종류 확대) 現 12종 → 15종으로 확대
(2단계 : 업종확대) 現 창업 5년내 제조업 → 창업 7년내 지식서비스업 포함
-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담을 경감하고,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('17년 세법개정안 등 반영)

구분	세목	현행	개선
창업기업	재산세	창업 5년內 50% 감면	창업 3년內 : 100% 감면 창업 4~5년 : 50% 감면
	소득세 법인세	창업 5년內 50% 감면	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감면 (최대 50%), 신성장서비스업 초기 3년 75%
기술혁신기업 (이노비즈)	취득세	수도권內 중과(3배)	중과 면제(일반과세)

□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

-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
 - 학생·직장인·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랩('22년 350개), 전문랩('22년 17개)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
 - 다양한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, 학교·지역동아리,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지원
 - 아이디어가 사업화·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기능 강화
 -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·양산을 지원하고,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* 연계 지원
- *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 공급(신보)
-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,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

※ 11.2일 「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방안」 별도 발표

□ **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**

-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
 -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(incubator)과 투자(investor)를 병행하는 액셀러레이터 기능 강화
 - 지역간 협력을 통해 센터별 강점을 **他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연계활용***하고, 전통시장 활성화·도시재생 등 성공사례 창출
 - * (예시) 강원센터 소재 기업이 전남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로 확보
 - **전담 대기업** 이외에도 지자체·지역기업·대학 등 **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주도적·자율적 참여 유도**

구 분	현 행	개 선
의사결정	하향식(top-down)	상향식(bottom-up)
지원체계	대기업 경직적 매칭 (일방지원)	중견·벤처, 대학 등 자율참여 (상생협력)
지자체 참여	자율적 참여 부족	적극적 참여·협력
센터 기능	창업, 중기지원,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여	초기창업 + 투자기능 집중, 센터별 특화

□ **판교밸리 조성과 국유재산·공공기관을 활용한 혁신창업 공간 확충**

- 현재 진행중인 **판교창조경제밸리***를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지원 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고수준의 **혁신모델로 선도개발**
 - * 43만m² 규모, 창업초기·벤처기업 1,000여개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 입주 기대
 - 판교밸리의 조성·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지방 도시첨단산업 단지(11개)를 대상으로 **판교모델 확산 추진계획 수립**
 - ※ 11월중 「(가칭)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」 마련·발표
- **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·활용**을 통해 창업기반 확충 지원
 - 도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시 일정부분을 **벤처집적시설·창업보육센터** 등으로 할당

- 창업·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유건물 대부료를 감면하고,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식재산 사용료 면제 추진
-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혁신기업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, 입주기업에 기술·설비·자금 등 지원
 - 입주기업 보유기술 구입을 통해 공공기관 업무혁신*에 활용
 - * (수자원공사) '18년부터 공사 시설(댐, 정수장 등)을 민간에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, 개발된 기술을 구입 또는 해외수출 등 판로지원 실시
- 원도심의 역사·문화 자산을 활용하면서 도심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(46개) 추진시 창업집적공간 조성
 - * (예시) 서울시 종로세운상가 도시재생 → 17개 청년창업팀 입주 등 창업공간 조성

□ **법률·세무·노무·지적재산권 애로지원을 위한 Support Hub 구축**

- 혁신센터·TIPS 타운 등을 중심으로 노무·세무·법률 등 창업자의 경영상 실무 애로지원 창구를 확충
 -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지식재산권화를 지원하고,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고품질 지식재산권 컨설팅 제공
 - * '18년 지원목표(건) : (예비창업자) 930, (창업기업) 420

4 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

◇ **죽음의 계곡과 J-Curve 효과**

- ① 초기기업은 창업 이후 3~5년에 사업실패율 급증('죽음의 계곡')
 - * 창업 후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양산·사업화 단계에서 자금·판로부족에 직면
 - ** 창업 5년 후 생존율('14년) : (獨) 41.0, (英) 37.5, (韓) 27.3
- ② 죽음의 계곡 극복 후 본격성장 단계에서 일자리창출 등 (+) 효과 극대화('J-curve')
 - * 전체 1%에 불과한 scale-up 기업이 고용·경제성장의 68%, 36% 기여(英)
- ③ 그간의 정부 정책지원은 대부분 초기 창업단계에 집중
 - * 창업단계별 예산비중('17년) : 창업준비 5%, 창업초기 62%, 창업도약 30%

□ 창업기업 성장단계 도약을 위한 패키지 지원 확대

- 창업 3~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*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,000억원으로 조기 확대

* 사업모델 혁신, 아이템 검증·보강·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, R&D 등을 최대 2년간 1억원 지원

-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업당 지원금액을 2배 확대*하고, 혁신성·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 집중지원**

* 지원기간 및 금액 : (현행) 최대 2년, 1억원 → (개선) 최대 2년, 2억원

** 고부가기술 분야 지원비중(%) : ('17년) 15 → ('18년) 50 → ('20년) 70

□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혁신형 조달제도 도입

- 초기 창업기업의 조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계약 (2.1억원 미만)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제*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전환

* (현행) 일정금액 이상의 조달실적이 있는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소규모 계약에도 적용

-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·서비스 개발·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* 도입

*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, EU·영 등에서 운용중

※ 11월중 「혁신성장·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」 별도 발표

□ 민간 유통채널 등의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판로확보 지원

- 정부 판로지원 사업체계를 온·오프라인 민간 유통채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업효과성 제고

* '18년중 판로지원 사업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→ 성과평가 후 전면도입

※ **민간유통망 중심의 판로지원 사업**

- 온오프라인 민간 유통채널이 자체 유통망에 판매할 **창업·벤처기업 제품**을 직접 **심사·선정·판매**(판매망 제공)
 - * (현행) 기업들이 판로지원 사업 신청 → 공공기관이 심사 → 기업에 지원금 지급
- 정부 **판로지원금**은 실제 판매금액에 비례하여 **해당 유통채널에 직접 지급**

- 공영홈쇼핑의 혁신제품 방송시간을 **20%까지 확대**(現 16.7%)하고, **비디오 커머스*** 마케팅 플랫폼 구축·운영

* 혁신제품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상거래(전세계 시장규모 2.1조원)

□ **글로벌 수준의 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체계 마련**

- TIPS를 통해 발굴된 혁신창업 기업(5년간 1,000개) 중 혁신성·성장성 높은 **20개 우수기업**을 매년 별도 선발·육성
 - 양산 등 대규모 자금 필요시점에 최대 **45억원**까지 집중지원
 - * 중진공에 민간투자연계 융자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·기보 보증 연계
- 글로벌 **벤처캐피털**을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**해외진출 지원**을 위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**외자유치펀드**(現 1.4조원) 추가 조성
- 중소기업 중심의 **수출인큐베이터 지원사업***을 창업기업 중심으로 일부를 개편하여 창업·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
 - *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(12개국 21개소)된 인큐베이터 시설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사무공간, 마케팅·법률 전문컨설팅 등을 지원(중진공 운영)
- 부처별로 분산된 창업·벤처기업 **해외진출 지원기능**을 지원 **기관간 연계***를 통해 **일괄(one-roof)** 서비스 제공
 - * 창업진흥원(중기부, 기업선발) → KIC(과기정통부, 공간제공) → KVIC(중기부, 자금제공)
- 전세계 스타트업·투자자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**창업 박람회** 및 **창업경진대회**를 국제행사로 확대

☞ **(현장목소리)** “현재 벤처정책은 국내 창업기업 위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벤처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지원이 절실합니다.” (OO 벤처기업 대표)

2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

◇ 재정·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,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,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붐 확산

① 혁신기업 지원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

※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·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·발표

□ 재정·정책금융을 마중물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추가 조성

- 주요국 수준*으로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

* 혁신모험펀드 조성·투자시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.13%(15년 기준)에서 '20~'22년 중 0.23%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(15년 기준 美 0.33%, 中 0.24%)

- 혁신모험펀드는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에 따라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·운영
-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①펀드 회수재원·②재정·③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

- 혁신모험펀드는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모험성을 강화하고, 모태·성장사다리 등 공공펀드간 운영·투자 연계 강화

□ 혁신모험펀드와 연계된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 마련

- 신·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연계 추진

* 신·기보 등의 보증 공급과 무보증 대출을 병행, 보증공급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에서 추가 출연 추진

-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 등에 M&A·사업재편·외부기술 도입(buy R&D)·설비투자 등 대규모자금 필요시점에 자금공급

□ **모태펀드의 국정과제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**

- **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지방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**
 - 피투자기업의 고용성과에 비례한 성과보수 제도 도입 추진
 - **자펀드 결성·투자·회수 단계별로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인장치를 마련**
 - * (결성단계) 지역기업 투자비중을 높게 제안하는 운용사에 모태펀드 우선 출자 (투자단계) 펀드 조성액의 일정비중을 지역기업 투자 의무화 (회수단계) 지방투자 손실 발생시 모태펀드가 손실금 일부를 우선 충당
- **혁신기업, 대학·출연연,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의 신기술 분야 특허역량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사업화 전용펀드 신설**

2 일반국민·근로자의 벤처투자 환경 개선

□ **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**

- 은퇴자·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

현행		개선	
투자구간	소득공제율	투자구간	소득공제율
1,500만원 이하	100%	3,000만원 이하	100%
1,500만원~5,000만원	50%	3,000만원~5,000만원	70%
5,000만원 초과	30%	5,000만원 초과	30%

-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시 **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**
 - * (현행) 투자시점에 기술개발 단계 등에 있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
-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**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등으로 확대***(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 - * (현행) 벤처기업, 창업 3년 이내 기보·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→ (개선)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(TCB) 우수기업,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

□ 혁신적 아이디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기회 확대

-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·발행한도를 완화하고, 사후감독을 강화
 - 금융·보험, 부동산,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크라우드펀딩을 모두 허용
 - 발행기업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(現 7억원)를 소액공모 한도(現 10억원) 확대와 연계하여 상향 검토
-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·전매제한·광고 등 분야의 완화된 규제*를 현장에 적용(9.28일 자본시장법 개정)
 - * (투자한도) 기업당 年 200→500만원, 총 年 500→1,000만원
(전매제한) 1년→6개월 / (광고) 인터넷포털 등 광고허용
- 창업 7년내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도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('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
□ 우리사주·스톡옵션에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

- 창업자-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등 성과 공유 컨설팅을 실시하고,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*
 - * (현행) 400만원 소득공제 → (확대) 창업·벤처기업에 한해 1,500만원 인정
- 핵심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
 -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

☞ (현장목소리) "2000년대 초반 벤처 붐 당시 스톡옵션 혜택은 우수인재들을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중견벤처도 인재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." (OO 벤처기업 회장)

□ 일반인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한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

○ 일반국민들도 소액으로 손쉽게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 정비

* (현행)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50인 미만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방식으로만 결성 가능 → 일반국민들의 참여 제한적

-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 조합결성·업무집행·해산 등 조합 운용에 관한 사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투자자보호 규정 마련

- 현행 창업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세제혜택*(양도소득세 비과세·출자금 소득공제)을 공모 창업투자조합에 동일하게 적용

* (양도소득세 비과세) 창투조합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(출자금 소득공제) 개인이 창투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10% 소득공제

3 벤처캐피탈 진입·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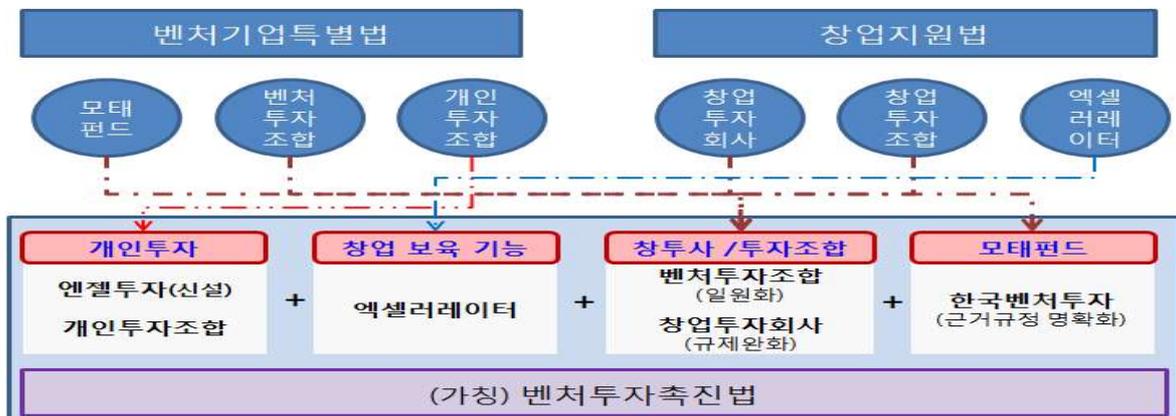
□ 벤처투자 관련 체계·제도 일원화를 위한 「벤처투자촉진법」 제정

○ “同一행위·同一규제” 원칙 적용을 위해 벤처법·창업법에 분산된 투자관련 제도를 「벤처투자촉진법」으로 통합

-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(창업법)과 벤처투자조합(벤처법)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

-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민간주도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최소화

○ 국내 벤처투자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의 주기적인 통합적 통계생산 의무화



□ **창업투자회사 · 조합의 자유로운 진입 ·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**

(★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**대표 규제혁신** 사례로 중점 추진)

-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창투자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(10.17일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),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

구 분	현 행	개 선
자본금 요건	50억원	20억원
전문인력 자격요건	국가 자격증, 학위 소지자	창업 · 투자 경험

☞ **(현장목소리)** “미국은 오래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고 창업경험을 가진 투자자가 많은 반면, 한국은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 등의 룰이 있어요. 그래서 경력만으로 한국에서 VC 만들기 힘들어요.” (OO 액셀러레이터 상무)

-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이 자유롭게 자금운용 ·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· 범위 · 방식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

- (투자대상) 일률적 ·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 등 의무투자비중(40%)을 창업투자회사 규모별로 차등화

- (투자범위) 사회통념에 벗어난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하고 **쑈 업종에 벤처투자 허용**(현재 숙박 · 음식점업, 부동산업 등 투자 제한)

- (해외투자) 창투사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**해외투자 제한을 완화**

* (현행) 국내 창업기업 등에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선투자한 후에만 해외투자 가능

- (투자방식) 다양하고 혁신적인 투자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**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**(예시 : SAFE*) 허용 검토

*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형태 투자방식

- 현재 개인투자조합 결성만 가능한 **창업기획자**(액셀러레이터)의 **벤처투자조합**(창업투자조합 포함) **결성***을 허용

* (현행) 창업투자회사, 신기술금융사, 유한책임회사(LLC)만 결성 가능

3 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

◇ “투자→회수→재투자”를 위해 코스닥·M&A 시장 활성화,
“창업→실패→재도전”을 위해 안전망 확충·재기지원 강화

1 코스닥 등 회수시장 경쟁력 제고

※ 12월중 「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」 별도 발표

□ 코스닥·코넥스·K-OTC 시장기능 회복·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

【 코스닥 】

-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유가증권시장(KOSPI)과의 경쟁 촉진
 - * (예시) 코스피·코스닥·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성과급 지급률 상향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
-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·관행 재정비*
 - * (예시) 테슬라요건 적용실적이 있는 주관사에 대해 풋백옵션(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3개월간 공모가의 90% 보장)을 완화하는 방안 등
-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, 경영투명성, 사회적 책임성 등에 대한 질적 상장심사 및 공시 확대
 - * (예시) 과거 5년간 대규모 횡령·배임, 회계분식 등이 발생하였거나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상장 제한
-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R&D 비용에 대해 최대 40%까지 세액공제(現 최대 30%)

【 코넥스 】

- 코넥스시장이 기업들의 성장자금 조달채널로 기능하기 위한 소액공모 한도 확대(10억원 →20억원) 등 제도 개선 추진

【 K-OTC 】

-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K-OTC에 ‘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’을 신설하고, 공시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

※ **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 활성화 방안**

- 사실상 모든 중소·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의 요건 폐지,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 확대
- 협의거래, 경매 등 매매방식을 다양화
- 거래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
- 모태·성장사다리 펀드,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 펀드 참여 유도

□ **연기금과 대형 IB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**

-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* 개선 등을 통해 '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(예시 : 10%) 확대 유도

* 연기금의 투자수익률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, 현재 연기금의 벤치마크 지수는 "KOSPI 200" 중심으로 구성

- 연기금 투자폴의 코스닥주식 비중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*시 '운용상품 집중도' 항목 평가배점(現 5점/총 100점) 확대 검토

* 기금운용 성과 등을 종합평가 → 평가결과 우수시 경영평가 가점 등 부여

- 초대형 IB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 및 자본규제 정비 등을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

② **M&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**

□ **M&A를 저해하는 기술·인력탈취 제재 강화**

- 기술탈취가 M&A보다 쉽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의 대폭 확대 검토

* (현행)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-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→ (개선)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

- 대기업 등의 기술유용 행위 억제를 위해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선제적 직권조사 강화

□ 대기업 등의 M&A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

- 대기업의 M&A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피인수 벤처·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연장(3년→7년)
- 중견·대기업 등의 M&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·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*(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 - * (현행) 인수·합병대가로 50%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 → (개선) 삭제
- 혁신형 M&A를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검토

□ 해외자본의 국내 M&A 시장 참여 지원

- 중국 등 해외 VC와 국내 스타트업간 정례적 만남의 장 제공
 - * 한·중 합작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국 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
- 국내 스타트업 미디어,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M&A 매물 정보를 확보, 해외투자정보망(CrunchBase 등)에 적시 제공

③ 재도전·재창업 지원 안전망 강화

□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으로 사업실패 부담 완화

-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를 폐지(18.上)하되, 도덕적해이 방지 보완책 병행
 - 책임경영지표*를 도입하여 보증심사시 활용하고, 주기적 사후 관리를 통해 법인 대표자의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·유도
 - * 법인과 대표자간 자산 등의 명확한 분리,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검증, 경영투명성 확보 여부 등
- 민간금융권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*토록 협약체결 추진
 - * (예시) 신·기보가 제공한 80% 부분보증서 대출인 경우, 은행의 신용대출로 지원되는 잔여 20%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

□ **사업실패시 자산압류·신용정보·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**

-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최저생계 등 현실에 맞게 **상향조정***하여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고를 완화

* (현행) 개인파산시 주택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 900만원(월 150만원 × 6개월)을 제외한 모든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 → (개선) 1,080만원으로 상향(월 180만원)

- 재기사업자*의 경우, 연체·체납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회사간 공유 및 개인신용등급 반영을 제한하여 신용회복 지원

* 신·기보, 중진공,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사업 대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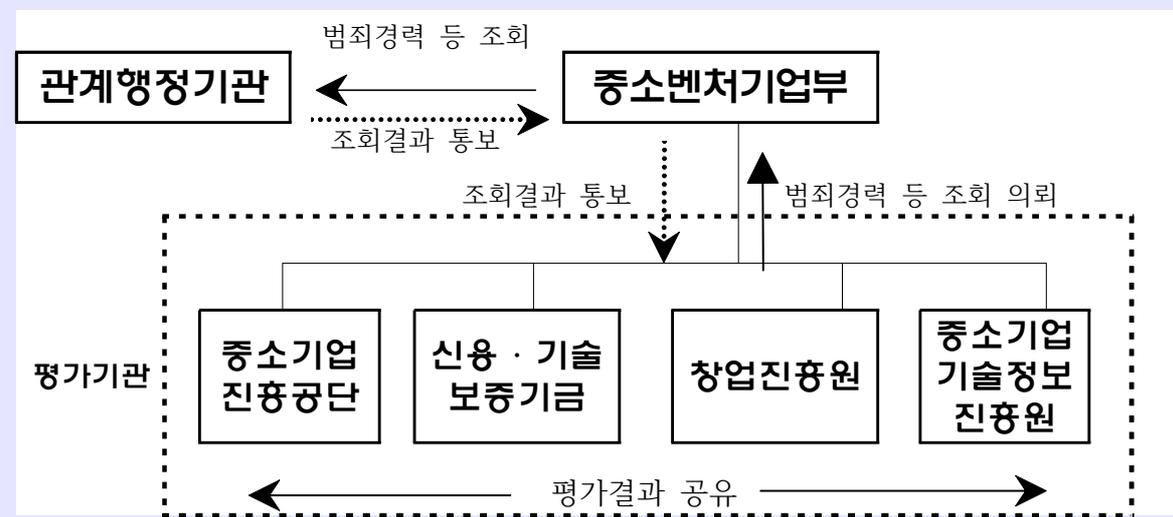
-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·취업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소액체납 납부의무 면제제도 한시시행('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
□ **재도전·재창업 지원 강화**

- 재도전·재창업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**성실경영 평가**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대상 확대(10.31일 규정 개정)

※ **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요**

-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인이 이전에 **고의부도, 분식회계, 부당해고** 등을 하지 않고 **성실하게 경영**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
-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**성실경영 평가**를 통과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



- 과거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**법령위반 경중 및 경과기간**을 고려하여 정부의 **재창업 지원사업**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
- 성실경영평가에 탈락하였으나 **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**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**재심의 절차** 보장
- **5개 평가기관*** 중 하나에서 평가를 통과하면 **최장 2년까지 효력을 인정**하여 사업신청시마다 평가를 받던 **불편함** 해소

* 중진공, 신보, 기보, 창업진흥원,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

구분	현행	개선
경영 및 노동관련 법령위반 여부 확인기간	재창업 前 전체 기간	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경과시 평가에 미반영 * 벌금형·집행유예 : 5년 징역·금고 3년 미만 : 10년 징역·금고 3년 이상 : 15년
이의제기에 따른 처리방법	담당자가 판단	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정상참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
정상참작 기준	평가기관별 상이	단일기준 마련 * ①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여부, ②재범 여부, ③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
평가결과 유효기간	기준 없음	최대 2년 (평가 후 다음연도 말일까지)

○ 재기기업인 조세특례제도(채납처분·징수유예)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**성실경영 평가통과자**를 추가('17년 세법개정안 반영)

- 재기기업인 조세특례 **채납액 기준**을 **상향** 조정(3→5천만원)

○ 모태펀드내 **재기지원펀드*** 조기 결성·집행, TIPS 방식의 민관 합동 **재도전 프로그램** 신설을 통해 재창업 지원기회 확대

* (일정) 재기지원펀드 '17년말까지 결성완료,
(대상) 폐업 사업주 등에 대해 60% 이상 투자

○ 사업정리·채무조정·재창업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**재도전 종합지원센터***를 확대·설치하여 체계적 재도전 지원

* (현행) 서울(2개)·부산·인천·대구·광주 등 9개 센터 운영중

IV. 추진계획

번호	정책과제	일정	부처
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			
1-1	사내벤처·분사창업기업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	'17.下	중기부
1-2	모기업의 사내벤처·분사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	'17.下	기재부 동반위
1-3	대학·출연연구·공공기관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	'18.上	교육부 과기부 기재부
1-4	다양한 창업유형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	'18.上	중기부
1-5	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	'18.上	중기부
1-6	TIPS 방식의 정책지원 프로그램 확대	'18.上	중기부
1-7	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공급 확대	'18.上	중기부 금융위
1-8	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확대	'18.下	중기부
1-9	초기 창업기업·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	'17.下	기재부 행안부
1-10	메이커 스페이스 조성	'18.上	중기부
1-11	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재설계	'17.下	중기부
1-12	판교창조경제밸리(명칭 공모중)를 혁신모델로 선도개발	'17.下	국토부 기재부
1-13	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·활용을 통한 창업기반 확충	'17.下	기재부
1-14	혁신도시 공공기관내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기업 지원	'18.上	기재부
1-15	창업도약패키지 사업 2배 확대	'18.下	중기부
1-16	혁신형 조달제도 도입	'17.下	기재부 조달청
1-17	창업기업 판로확보 지원	'18.下	중기부
1-18	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체계 마련	'18.上	중기부

번호	정책과제	일정	부처
----	------	----	----

②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

2-1	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신설	'17.下	중기부 금융위
2-2	혁신모험펀드 연계형 대출프로그램 마련	'17.下	중기부 금융위
2-3	모태펀드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	'18.上	중기부
2-4	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	'17.下	기재부
2-5	클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및 세제혜택 부여	'17.下	금융위 기재부
2-6	우리사주·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	'17.下	기재부
2-7	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 정비	'18.下	중기부
2-8	벤처투자촉진법 제정	'18.上	중기부
2-9	창업투자회사 규제 혁신	'18.上	중기부

③ 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

3-1	코스닥·코넥스·KOTC 제도 정비 및 세제지원	'17.下	금융위
3-2	연기금·대형IB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	'17.下	금융위
3-3	기술·인력탈취 제재 강화	'18.上	중기부 공정위
3-4	대기업의 M&A참여 인센티브 확대	'17.下	중기부 기재부 동반위
3-5	연대보증제 폐지 확산	'17.下~	금융위 중기부
3-6	사업실패시 재산압류·신용정보·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	'17.下~ '18.下	법무부 금융위 기재부
3-7	성실실패자 기준 완화 및 조세특례 확대	'17.下	중기부
3-8	TIPS방식의 제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	'17.下	중기부